

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13. 6. 11 조례 제1300호
일부개정 2022. 5. 17 조례 제230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5. 17>

제2조(설치)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[본조신설 2022. 5. 17]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2. 5. 17>

1.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 우려 여부,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2.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(사방사업)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
4. 타 법률에서의 지정·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의2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 5. 17>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 <개정 2022. 5. 17>

1. 용인시 소속 관계 공무원

2. 용인시의회의원
3. 산사태·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산사태·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
5. 용인 시민

[중전 제2조에서 이동 2022. 5. 17]

제4조(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22. 5. 17>

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,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2. 5. 17>

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. <개정 2022. 5. 17>

⑥ 삭제 <2022. 5. 17>

[제목개정 2022. 5. 17]

제6조(대리출석)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22. 5. 17]

제7조 삭제 <2022. 5. 17>

제8조(의견청취) ① 위원장은 안전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(이하 “관계인”이라 한다),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삭제 <2022. 5. 17>

제9조(심의결과 통보)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토지의 소유자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2. 5. 17]

제10조(회의록 등)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심사사항
3. 회의진행 상황
4. 위원 발언요지
5. 심의결과
6.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현지조사)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서면심의)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<개정 2022. 5. 17>

② 위원회의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 5. 17>

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, 상정안건의 설명,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.

④ 삭제 <2022. 5. 17>

[제목개정 2022. 5. 17]

제14조 삭제 <2022. 5. 17>

제14조의2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2. 5. 17]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5. 17 조례 제230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